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4. 4. 30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4월 9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본 조례안은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부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·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
-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~제5조)
- 추진사업·업무의위탁 등·홍보(안 제6조~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부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」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
- 안 제2조제3호에서는 “정보”, “정보화”, “정보격차” 등 정보와 관련된 용어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르도록 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법 제45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,
-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에 기반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 전문적·효율적으로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

마련하였으며,

- 안 제8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보호자가 구 정책 및 추진사업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현대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,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과 직결되지만,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 접근성 및 활용 능력이 떨어짐.
- 이에 따라 서울시 타 자치구 15개에서는 장애인 등의 정보 취약계층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립, 사회적 연결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2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4. .

발 의 자: 유승용 의원

## 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비장애인보다 정보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부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, 시행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추진사업, 업무의위탁 등, 홍보(안 제6조~제8조)

## 3. 제정안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능정보화기본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4. 9. ~ 4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사회·복지·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(실행계획의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추진사업)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
2.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3. 그 밖에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업무의 위탁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홍보)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책 및 추진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